

No. 40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특정 법 조항 정지 유지

2011년 8월 25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No. 17에서 뉴욕주 Bronx, Kings, New York, Queens, Richmond, Nassau, Suffolk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재해 긴급사태 선포를 했으므로, 그리고

2011년 9월 15일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하여 행정 명령 제 17호를 개정한 행정 명령 제 21호를 발행하였고, 이는 다음의 추가의 카운티 영토 경계 내에서 2011년 9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 Albany, Broome, Chenango, Chemung,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Greene, Herkimer, Montgomery, Oneida, Orange, Otsego,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llivan, Tioga, Ulster, Warren, Washington 및 Westchester.

행정법 섹션 29-a에 의해,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해당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이나 규정, 또는 그것의 일부를 정지, 변경 및 수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2011년 9월 15일, 농업 및 자연 자원 기반시설의 복구를 더 빠르게 하고 주의 비상재해의 영향을 입은 지역 농장들의 현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들을 유예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한다; 그리고

행정법 섹션 29-a에 따르면 법 조항 정지는 30일 이상 될 수 없으나,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 정지기간이 30일 추가로 연장된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해 명령된 법의 유예를 2011년 11월 13일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29호를 발표한다.

2011년 11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해 명령된 법의 유예를 2011년 12월 13일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32호를 발표한다.

2011년 12월 16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해 명령된 법의 유예를 2012년 1월 12일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35호를 발표한다.

2012년 1월 11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해 명령된 법의 유예를 2012년 2월 12일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37호를 발표한다.

2011년 2월 14일에, 행정명령 No. 22에 의한 법 정지 명령을 2012년 3월 14일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No. 39를 발표했으므로,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는 뉴욕주 주지사로서 행정법 제2-B항 섹션 29-a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모든 관련 사항과 상황을 검토한 결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해 명령된 행정법 규정의 유예를 2012년 4월 14일까지 계속할 것을 명령한다.

2012년 3월 16일 Albany시에서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비서실장